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나이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9조)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전제로 한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를 삭제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임기를 시행령으로 조정(안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문구의 인용 조문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정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u> <u>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u>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③·④ (생략)	<u><삭 제></u>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 2. (생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 5. (생략)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같음)

⑦ ----- 제6항-----

-----.

제7조(취업애로 청년)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4. · 5. (현행과 같음)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423